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청년 등의 참여 활성화〉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2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청년 등의 참여 활성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Ⅲ. 검토의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청년 등의 참여 활성화

□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장애청년 등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u>한다</u> .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하며, 장애청년(청년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⑦ ~ ⑨ (생략)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 ⑤ (생략)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u>다양한</u>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취약계층 청년, 장애청년 등 다양한</u> ----- -----.

□ 현행법 제13조¹⁾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

1)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위원(국무총리, 관계 중앙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① 청년정책 전문가나 ②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²⁾)을 대표하는 자(이하 “청년위원”이라 함)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데,

현행법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2항은 민간위원 위촉 시에 “성별” 및 “청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3)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25년 4월 기준, 총 39명) >

당연직위원 (총 20명)	민간위원(총 19명)	민간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남성 11명, 여성 8명	성별 고려 (법 제13조제6항)
①국무총리(1명) ②중앙부처장관(17명) ③지방자치단체장(2명)	①청년정책전문가(6명) ②청년*위원(13명) *청년: 19세이상 34세이하	3/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법 제15조제2항)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장애청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청년정책 수립 시에 장애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장애청년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위원으로 가능한 위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 및 취약계층청년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청년 등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4)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 청년 중 장애청년만 특정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시에 이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⁵⁾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⁶⁾에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청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학교 밖 청년, 가족돌봄 청년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음.⁷⁾

□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에 장애청년 뿐만 아니라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 5)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이하 생략)
- 6)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7)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및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中
‘청년 취약계층 지원’ 사업내용**

지원사항	내용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 청년) - 자립수당 인상(2023년 40만원 → 2024년 50만원) 및 지급대상 확대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확대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가족돌봄 청년)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전담기관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등 발굴·지원체계 구축 추진 (고립·은둔 청년) -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사회 재진입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및 고립·은둔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가정 밖 청소년) -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 기간 연장(3년→5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확대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청년 장애인)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인력 및 보조기기 지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교육 및 전문 예술인 도약을 위한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